

Maximizing
Potential

더존 iCUBE

더존 Smart연말정산 서비스

2021.12

더존비즈온



DOU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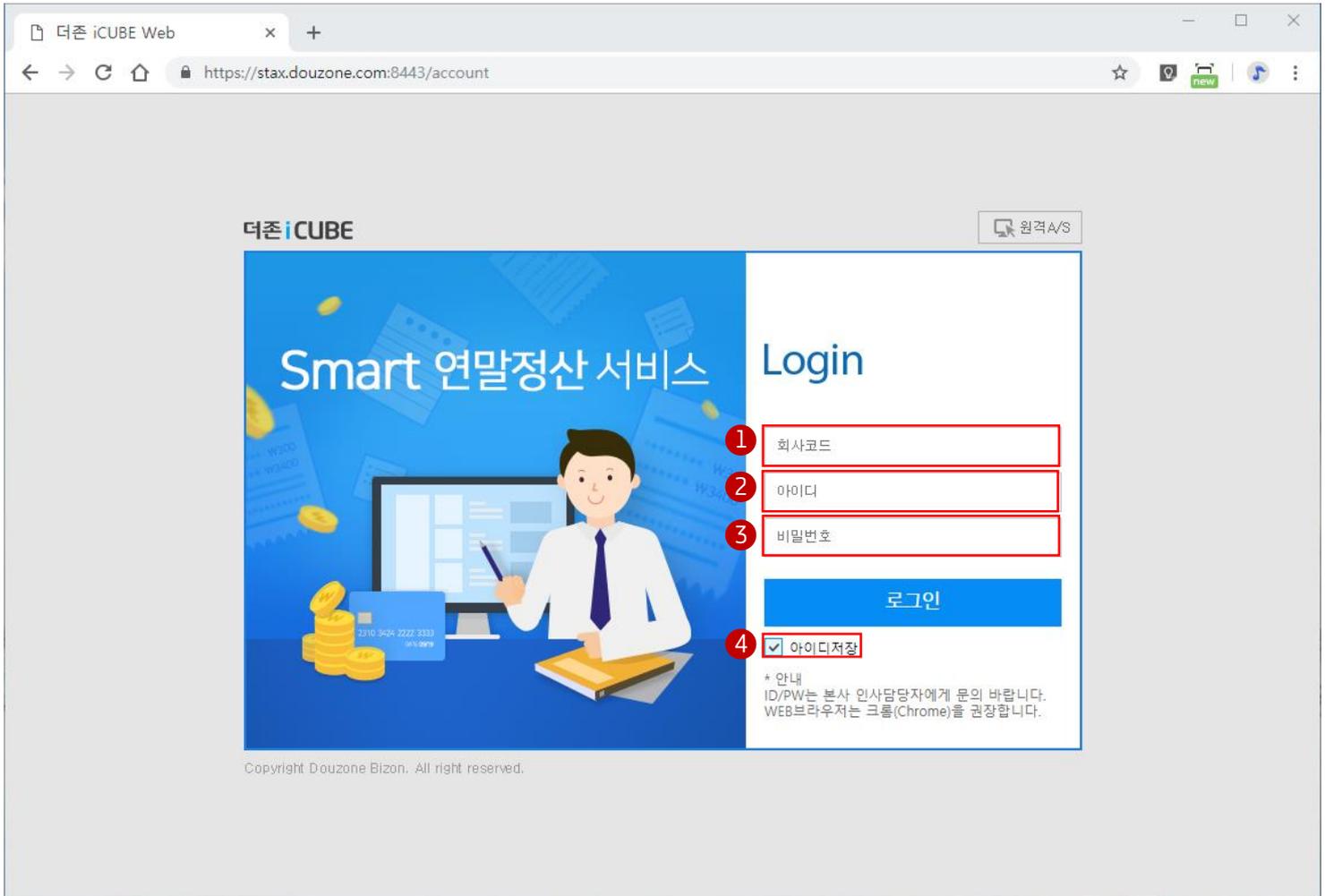
www.douzone.com

CONTENTS



1. 더존 Smart 연말정산 로그인 화면	03
2. 연말정산등록가이드	04
3. 연말정산자료입력	06
3_1. 기본정보입력	07
3_2. 국세청자료업로드	12
3_3. 공제자료입력	14
3_4.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33
4. 연말정산명세	35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6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7

1. 더존 Smart연말정산 로그인 화면



01 개요

[더존 Smart 연말정산서비스] 로그인 화면입니다.

02 작업방법

1.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받은 'WEB 접속 회사코드'를 입력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사원코드'를 입력합니다.
3.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받은 근로자 본인의 [Smart 연말정산 서비스]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 ID/PW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추후 재 접속 시, 최근 접속 기준의 'WEB 접속 회사코드' 및 '사원코드'를 저장하여 자동 반영합니다.

2. 연말정산등록가이드

연말정산등록가이드

<필독사항>

- Smart 연말정산 등록 작업을 위한 WEB 브라우저는 크롬(Chrome)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으며, 크롬(Chrome)을 통한 등록작업을 권장합니다.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저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시 모든 부양가족 자료까지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담당자가 WEB 데이터 수신처리하면 추가 수정이 불가 합니다. (수정 필요 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

※ 참고사항
장시간 미사용으로 인해 접속이 종료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좌측 상단 [더존iCUBE] 로고를 클릭 → 재로그인 후 접속
2) 우측 상단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여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 → 로그인 창에서 재로그인 후 접속

<연말정산 프로세스>

01 개요

[더존 Smart 연말정산서비스] 로그인 시 표시되는 메인 화면입니다.
[더존 Smart 연말정산서비스] 작업을 위한 기본 등록 가이드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관련 작업 메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02 작업순서

<작업순서>

① 연말정산등록가이드 확인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 → ③ 연말정산자료입력 등록
→ ④ 연말정산명세 확인(확정 전 연말정산결과보기) → 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인사담당자 확정 후 연말정산 결과보기)

03 필독사항

1. Smart 연말정산 등록 작업을 위한 **WEB 브라우저는 크롬(Chrome)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으며, 크롬(Chrome)을 통한 등록작업을 권장합니다.
2.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저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자료를 포함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 작성 시 입력 오류, 공제내역 과다입력 등으로 소득세 추징 원인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소득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6. 연말정산 담당자가 WEB 데이터 수신 처리하면 추가 수정이 불가 합니다.
(수정 필요 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장시간 미사용으로 인해 접속이 종료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1) 좌측 상단 [더존iCUBE] 로고를 클릭 → 재 로그인 후 접속
- 2) 우측 상단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여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 → 로그인 창에서 재 로그인 후 접속

3. 연말정산자료입력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더존iCUBE
김길동 | 원격A/S

연말정산

- 연말정산등록가이드
- 연말정산자료입력
- 연말정산명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1 기본 정보 입력

2 국세청 자료 업로드

3 공제 자료 입력

4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첫째/둘째/셋째이상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4.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화면에서는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부양가족명세 저장 추가 삭제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부양관계	장애인구분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출산·입양	나이
1	김길동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6
2	김영수	15121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3	김영아	16121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4	김영희	18012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5	김월영	42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자의 직계존속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9

•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설명
배우자공제 해당	경로우대 1	
20세이하 3	장애인공제 0	
60세이상 2	부녀자 비해당	부녀자/한부모가족공제(추가공제)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0	한부모가족 비해당	
수급자/위탁아동 0	자녀세액공제 0	
	자녀세액공제(출산, 입양) 0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세대주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세대주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해당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무주택자해당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01 개요

연말정산 진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등록하고, 공제 항목 별 조회하여 해당하는 소득/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을 등록합니다.

02 작업방법

1. [기본 정보 입력]을 선택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등록합니다.
2. [국세청 자료 업로드]를 선택하여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제자료입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2) PDF파일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3. [공제 자료 입력]을 선택하여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 1) '국세청 자료 업로드'를 통해 전송한 연말정산 PDF파일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고, 항목 별 수정 및 추가할 내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 추가 등록합니다.
4. [소득공제신고서 인쇄]를 선택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인쇄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기본 정보 입력 (부양가족명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기본 정보 입력
국세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첫째/둘째/셋째이상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4. 2020년 10월 이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화면에서는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부양가족명세
1
2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부양관계	장애인구분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출산·입양	나이
1	김길동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6
2	김영수	15121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6
3	김영아	16121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5
4	김영희	18012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
5	김철영	42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자의 직계존속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79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설명
배우자공제	해당	경로우대 1
20세이하	3	장애인공제 0
60세이상	2	부녀자 비해당
장애인	0	한부모가족 비해당
수급자/위탁아동	자녀세액공제	0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0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세대주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세대주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해당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무주택자해당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01 개요

연말정산 대상 부양가족을 직접 수정 및 추가/삭제하여 등록하고, 본인(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항목을 등록 및 확인합니다.

02 작업방법

1. 부양가족 명세 정보확인 및 수정하기

1)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 및 추가/수정합니다.

- (1)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합니다.
- (2) 부양가족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틀린 경우는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본인의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수정 시, 마우스 클릭 후 키보드 방향지시(→)를 선택하여 수정합니다.
- (3)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 할 경우,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을 생성하여
- (4)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 다음 라인에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 (5) 부양가족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삭제를 원하는 부양가족 데이터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클릭한 후 상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2) 공제항목과 나이를 확인합니다.

- (1) 추가 및 수정한 부양가족 정보에 따라 <장애인구분>, <기본공제>를 직접 선택 등록하면, 해당 기준으로 '공제항목(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과 '나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2) 기본공제 항목의 경우 직접 해당 여부에 따라 체크 수정이 가능합니다.
- (3) 자녀공제 최초 조건에 따라 항목 별 자동 체크되며 직접 해당 여부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4)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체크합니다.
- (5) <출산·입양>의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직접 해당 자녀의 공제 대상 조건을 등록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기본 정보 입력 (부양가족명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제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첫째/둘째/셋째이상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4. 2020년 10월 이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화면에서는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부양가족명세 저장 추가 삭제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부양관계	장애인구분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출산·입양	나이
1	김길동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6
2	김영수	15121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6
3	김영아	16121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5
4	김영희	18012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
5	김철영	42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자의 직계존속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79

• 인적 공제

기본공제	해당	추가공제	설정
배우자공제	해당	경로우대	1
20세이하	3	장애인공제	0
60세이상	2	부녀자	비해당
장애인	0	한부모가족	비해당
수급자/위탁아동	0	자녀세액공제	0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0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세대주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세대주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해당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무주택자해당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더블 클릭 시 도움말 활성화

비해당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본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직계비속(4번 제외)
형제자매
수급자(1-6번 제외)
위탁아동

02 작업방법

2. 부양가족 추가하기

부양가족을 추가 등록 할 경우,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 다음 라인에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을 생성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 1) 성명 입력 : 부양가족의 성명을 입력 후 마우스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2) 주민등록번호 입력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를 빼고 숫자만 13자리를 입력 후 마우스로 이동합니다.
 - ♣ 화면에는 자동으로 '-'가 추가되어서 표시됩니다.
 -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붉은색 음영처리 되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는 정상 표시됩니다. (외국인 제외)
- 3) 내국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기준에 따라 내국인 선택이 자동 반영됩니다.
 - ♣ '내국인'일 경우 선택하고, '외국인'일 경우 선택 제외합니다.
- 4) 부양관계 입력 : 부양관계 입력 칸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부양관계코드' 도움말 창이 나타납니다. '부양관계코드' 도움말 창에서 부양가족의 <부양관계>를 선택합니다.
- 5) 장애인구분 입력 : 장애인구분 입력 칸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장애인구분코드' 도움말 창이 나타납니다. '비해당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 중증환자'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기본 정보 입력 (부양가족명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기본 정보 입력
국제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첫째/둘째/셋째이상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4. 2020년 10월 이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화면에서는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부양가족명세
저장
추가
삭제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부양관계	장애인구분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출산·입양	나이
1	김길동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6
2	김영수	15121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6
3	김영아	16121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5
4	김영희	18012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
5	김철영	42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속자의 직계존속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79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설명
배우자공제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경로우대 1	
20세이하 3	장애인공제 0	
60세이상 2	부녀자 비해당	부녀자/한부모가족공제(추가공제)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0	한부모가족 비해당	
수급자/위탁아동 0	자녀세액공제 0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0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세대주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세대주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해당여부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무주택자해당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02 작업방법

6) 공제항목과 나이 반영 확인하기
 부양가족 정보에 따라 '기본공제' 여부를 선택하면, '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 나이'가 자동 반영됩니다.

♣ '출산·입양'의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직접 해당 자녀의 공제 대상 조건을 등록합니다.

구분	확인 사항
기본공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직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구분이 1.장애인복지법 / 2.국가유공자등 / 3.중증환자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자녀공제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되며, 수정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2001.1.1 이후 출생자)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체크합니다.
출산·입양	2021년 출생(입양)한 자녀인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직접 해당 자녀의 공제 대상 조건을 선택합니다.

- ♣ 조건에 따라 항목 별 자동 체크 되며, 기본공제 항목의 경우 해당 여부에 따라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 자동으로 적용된 '공제항목'에서 회색부분은 수동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흰색 부분은 수정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기본 정보 입력 (인적공제확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기본 정보 입력
국제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첫째/둘째/셋째이상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4. 2020년 10월 이 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화면에서는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부양가족명세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부양관계	장애인구분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자녀공제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출산·입양	나이
1	김길동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6
2	김영수	15121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6
3	김영아	16121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5
4	김영희	18012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
5	김철영	42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속자의 직계존속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79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설명
배우자공제 <input type="checkbox"/> 해당	경로우대 <input type="checkbox"/> 1	
20세이하 <input type="checkbox"/> 3	장애인공제 <input type="checkbox"/> 0	
60세이상 <input type="checkbox"/> 2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부녀자/한부모가족공제(추가공제)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0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수급자/위탁아동 <input type="checkbox"/> 0	자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해당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세대주여부 해당 비해당 세대주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무주택자해당여부는 해당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02 작업방법

3. 인적공제 확인 및 수정하기

본인(근로소득자)의 인적 공제를 등록합니다.

(부녀자 / 한부모가족 공제(추가공제) 해당 여부는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1) '인적공제'를 통해 본인(근로소득자)의 인적 공제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합니다.
- 2)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비해당 / 해당)
 - ♣ 2015년 부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과세 종료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인 경우 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3) 한부모가족 : 부양가족명세 [부양관계-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비해당/ 해당)
 -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으로 직접 등록합니다.
 - ♣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4)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와 '세대주여부', '무주택자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항목에 체크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소득공제 종합한도 및 공제요건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20세 이하)	제한없음

항목	구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특별 소득 공제	건강, 고용, 장기요양 보험료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2018년 이후 투자분 (다만,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본한도 (총급여기준) - 7천만원 이하 : MIN[연 300만원, 총급여액 20%]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추가한도 (지출분 존재 시 추가한도 합산)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 소비증가분 1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The screenshot shows the '국세청 자료 업로드' (Upload Tax Authority Data) step in the tax filing process. The interface includes a progress bar at the top with steps: '기본정보 입력', '국세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and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The '국세청 자료 업로드' step is active. Below the progress bar, there is a section titled '국세청자료 가져오기' (Import Tax Authority Data) with a sub-note: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업로드'. The main area displays a grid of tax items with their respective amounts: 보험료 (4,250,000), 의료비 (1,750,000), 실손의료비 (520,000), 현금영수증 (345,660),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0), 주택자금 (3,500,000), 월세 (3,500,000), and 기부금 (210,000). A file explorer window is open, showing a PDF file named '이강석(880121)-2020년도자료.PDF' selected for upload. The file name is entered in the '파일 이름(N):' field. At the bottom, there are '이전' (Previous) and '다음' (Next) buttons.

01 개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을 업로드 하고,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자료를 전송합니다.

02 작업방법

1. 국세청자료 가져오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을 업로드 하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의 금액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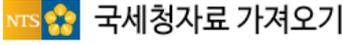
- 1) '국세청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PDF가 있는 폴더에서 업로드 할 대상자의 PDF 파일을 선택합니다.
- 2)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 3) 업로드 된 PDF 자료의 공제항목별 총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기본 정보 입력
국세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국세청 PDF전자문서 업로드는 공제항목의 공제한도내에서 금액을 저장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자료 반영시, 지출처가 불분명한 **교육비로 인한 차액이 (310,000)원** 입니다.
 - [국세청자료업로드]에서 **차이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 후, **공제가능 시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4,250,000


 의료비
1,750,000


 실손의료보험금
520,000


 교육비
4,000,000

국세청자료 반영 시, 지출처가 불분명한 교육비로 인한 차액이 확인되는 경우,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국세청 자료 업로드]에서 교육비 차이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공제가능 여부를 확인 후, 공제가 가능한 경우 차이금액을 [공제자료입력] > 교육비 에서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기본 정보 입력
국세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교육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이 [관계-직계존속]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국세청자료업로드] 시 '교육비'는 학생 1명 당 연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 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반영됩니다.
 5. [국세청자료업로드]에서 차이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공제가능여부를 확인 후 공제가 가능 시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관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취학전	초중고	대학교	장애인특수	취학전	초중고	대학교	장애인특수
1	김길동	75-01-01	본인	0	0	1,500,000	0	0	0	1,500,000	0
2	박순심	57-01-01	소득자의 직...	0	0	0	0	0	0	0	0
3	김철영	42-01-01	소득자의 직...	0	0	0	0	0	0	0	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0	0	0	0	0	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자...	0	0	0	0	0	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자...	400,000	0	0	0	100,000	0	0	0
7	김영희	18-01-23	직계비속(자...	300,000	0	0	0	200,000	0	0	0

03 필독사항

- 교육비 등 PDF 파일 업로드 시 취학 전 자료 및 보육시설 외의 자료 중, 전자문서 구분 값이 '기타'인 경우 자동으로 [공제자료입력]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 학원, 기타 항목으로 수집된 자료)
 -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구분 값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PDF자료전송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값이 반영되어 오히려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 등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분 값이 '기타'인 경우 사용자가 판단하여 직접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를 재반영 하시는 경우, [공제자료입력]에서 조회버튼을 실행하여 입력사항을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보험료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보험료** 19,370,86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9,010,000
- 직불카드 7,940,000
- 현금영수증 7,150,000
- 연금보험료 5,70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0
- 세액공제 20,0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10,600,000

보험료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지역 가입분 및 기 공제한 건강보험 금액과 국세청 PDF 자료 차액에 대해서는 [그밖의자료-건강(지역)] 항목을 통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관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일반보장성	장애인전용	일반보장성	장애인전용	건강	고용	건강(지역)	고용(지역)
1	김길동	75-01-01	본인	1,000,000	0	500,000	0	12,320,860	600,000	0	0
2	박순심	57-01-01	소속자의 ...	1,500,000	0	0	0	0	0	0	0
3	김철영	42-01-01	소속자의 ...	1,500,000	0	0	0	0	0	0	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1,000,000	0	500,000	0	0	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	100,000	0	50,000	0	0	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	100,000	0	50,000	0	0	0	0	0
7	김영희	18-01-23	직계비속(...	100,000	0	50,000	0	0	0	0	0
합계				5,300,000	0	1,150,000	0	12,320,860	600,000	0	0

01 개요

‘국세청 자료 업로드’를 통해 공제항목 별 전송한 PDF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고, 직접 수정 및 추가/삭제 작업을 통해 최종 연말정산 공제 데이터를 확정 등록합니다.

02 작업방법

1. 보험료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보험료]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별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간소화 PDF)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보험료 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공제),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공제)
- ♣ 건강/고용보험 지역 가입분 및 기 원천징수한 건강/고용보험 금액과 국세청 PDF 자료 차액에 대해서는 [그밖의자료-건강(지역)], [그밖의자료-고용(지역)] 항목을 통해 입력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의료비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보험료 19,370,86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9,010,000
- 직불카드 7,940,000
- 현금영수증 7,150,000
- 연금보험료 5,70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0
- 세액공제 20,0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10,600,000

의료비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2.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MY NTS 또는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 수령금액을 확인 후 기재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여 의료비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경구입비(시력보정용)의 경우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한도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하여 입력하여 의료비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의료비공제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성명	생년월일	관계	본인 등 해당여부	의료증빙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건수	금액	실손의료보험금	난임시술비 해당여부	건강보험산정 특례자여부
1	김길동	75-01-01	본인	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1,000,000	0	비해당	비해당
2	박순심	57-01-01	소득...	비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300,000	0	비해당	비해당
3	김영수	15-12-12	직계...	비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500,000	0	비해당	비해당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비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1,500,000	0	비해당	비해당
5	김철영	42-01-01	소득...	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2,000,000	0	비해당	비해당
6	김영아	16-12-12	직계...	비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150,000	0	비해당	비해당
7	김영희	18-01-23	직계...	비해당	국세청장제공			일반의료비	0	300,000	0	비해당	비해당
합계										0	5,750,000	0	

01 개요

‘국세청 자료 업로드’를 통해 공제항목 별 전송한 PDF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고, 직접 수정 및 추가/삭제 작업을 통해 최종 연말정산 공제 데이터를 확정 등록합니다.

02 작업방법

2. 의료비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의료비]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별 [의료비] 공제 내역을 추가 등록 할 경우,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다음 라인에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을 생성하여 해당 부양가족 [의료비] 내역을 직접 입력합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간소화 PDF) 의료비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의료비 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의료증빙코드가 [국세청장제공]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부양가족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의료비 자료 상에는 [난임시술비],[건강보험산정특례자] 관련 사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5)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교육비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보험료 19,370,86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9,010,000
- 직불카드 7,940,000
- 현금영수증 7,150,000
- 연금보험료 5,70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0
- 세액공제 20,0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10,600,000

교육비 저장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2.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이 [관계-직계존속]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국세청자료업로드] 시 '교육비'는 학생 1명 당 연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 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반영됩니다.
 5. [국세청자료업로드]에서 차이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공제가유여부를 확인 후 공제가 가능 시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관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취학전	초중고	대학교	장애인특수	취학전	초중고	대학교	장애인특수
1	김길동	75-01-01	본인	0	0	1,500,000	0	0	0	1,500,000	0
2	박순심	57-01-01	소득자의 ...	0	0	0	0	0	0	0	0
3	김철영	42-01-01	소득자의 ...	0	0	0	0	0	0	0	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0	0	0	0	0	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	0	0	0	0	0	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	400,000	0	0	0	100,000	0	0	0
7	김영희	18-01-23	직계비속(...)	300,000	0	0	0	200,000	0	0	0
합계				700,000	0	1,500,000	0	300,000	0	1,500,000	0

02 작업방법

3. 교육비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교육비]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별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 (간소화 PDF) 교육비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교육비 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교육비 입력 시 한도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금액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 초과입력 시 자동으로 한도금액 이상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은 전액공제입니다. 한도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 부양가족이 [관계-직계존속]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가능)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신용카드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신용카드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저장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5. 2020년/2021년 사용분 금액은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버튼을 통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자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통시장 대중교통 외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외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	김길동	75-01-01	본인	1,100,000	300,000	0	1,000,000	1,500,000	300,000	0	0
2	김철영	42-01-01	소득자의 직계...	500,000	0	300,000	150,000	0	0	0	0
3	박순심	57-01-01	소득자의 직계...	800,000	0	0	150,000	0	0	20,000	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2,500,000	0	150,000	30,000	0	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자녀/...	0	0	0	0	0	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자녀/...	0	0	0	0	0	0	0	0
7	김영희	18-01-23	직계비속(자녀/...	0	0	0	0	0	0	0	0
소계				4,900,000	300,000	450,000	1,330,000	1,500,000	300,000	20,000	0

02 작업방법

4. 신용카드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별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간소화 PDF)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직불카드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국세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보험료 21,149,40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8,800,000
- 직불카드 3,500,000
- 현금영수증 11,840,000
- 연금보험료 7,86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2,042,098
- 세액공제 20,1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5,200,000

< 직불카드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저장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직불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5. 2020년/2021년 사용분 금액은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버튼을 통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자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통시장 대중교통 외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외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	김길동	75-01-01	본인	1,300,000	500,000	150,000	300,000	200,000	0	0	0
2	김철영	42-01-01	소득자의 직계...	0	0	0	0	0	0	0	0
3	박순심	57-01-01	소득자의 직계...	0	0	300,000	0	0	0	0	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750,000	0	0	0	0	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자녀/...	0	0	0	0	0	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자녀/...	0	0	0	0	0	0	0	0
7	김영희	18-01-23	직계비속(자녀/...	0	0	0	0	0	0	0	0
소계				2,050,000	500,000	450,000	300,000	200,000	0	0	0

02 작업방법

5. 직불카드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직불카드]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별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간소화 PDF)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직불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저장

현금영수증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2020년/2021년 사용분 금액은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버튼을 통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자			국세청자료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	김길동	75-01-01	본인	1,500,000	750,000	0	200,000
2	김철영	42-01-01	소속자의 직계존속	0	0	0	0
3	박순심	57-01-01	소속자의 직계존속	250,000	0	0	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0	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자녀/입양자)	40,000	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자녀/입양자)	0	0	0	0
7	김영희	18-01-2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0	0	0	0
소계				1,790,000	750,000	0	200,000

02 작업방법

6. 현금영수증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현금영수증]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별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간소화 PDF)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현금영수증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번호	대상자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성명	생년월일	관계	2020년 사용분	2021년 사용분	2020년 사용분	2021년 사용분
1	김길동	75-01-01	본인	5,000,000	7,100,000	50,000	2,000,000
2	김철영	42-01-01	소득자의 직계존속	300,000	950,000	0	0
3	박순심	57-01-01	소득자의 직계존속	700,000	1,500,000	0	20,000
4	홍미영	81-01-01	배우자	3,100,000	3,430,000	0	0
5	김영수	15-12-12	직계비속(자녀/입양자)	0	40,000	0	0
6	김영아	16-12-12	직계비속(자녀/입양자)	0	0	0	0
소계				9,100,000	13,020,000	50,000	2,020,000

! 입력화면 안내

2020년 사용분(국세청/그밖의자료)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2020년 귀속 iCUBE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 신용카드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있는 경우, 2021년 귀속 iCUBE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점에 2020년 신용카드 등 금액이 합산되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020년 사용분 데이터는 직접 수정 하거나, 국세청간소화 PDF의 데이터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사용분(국세청/그밖의자료)

2021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스마트연말정산(WEB)의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화면에서 금액을 입력한 뒤 [저장]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입력한 금액이 합산되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2021년 사용분 데이터는 직접 수정하거나, 국세청 간소화 PDF의 데이터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해당 화면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모두 **동일하게** 조회됩니다.

저장 취소

02 **작업방법**

※ 2020년/2021년 사용분 입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2020/ 2021년 사용분을 부양가족 별로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 국세청 제공 (간소화 PDF)의 2020/2021년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그밖의자료 : 국세청 자료 이외에 2020/2021년 사용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데이터 입력 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이 [관계-형제자매]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연금보험료

당해 연도 [연금보험료]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확인 및 입력 저장

국민연금	1,200,000	급여자료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지역)	0	지역의료보험등에 납부한 연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외)

공무원연금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군인연금	0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별정우체국연금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	3,000,0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과학기술인공제	0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금저축	0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ISA계좌 개인연금	1,500,000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공제
ISA계좌 퇴직연금	0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공제

02 작업방법

7. 연금보험료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연금보험료]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iCUBE 급여작업을 통해 원천 징수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종전근무지 공제항목에서 입력한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합니다.

- 국민연금(지역) : 국민연금 지역 납입액이나, 급여작업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조정 입력합니다.

2)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금액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3) 연금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를 공제해주는 ISA계좌 개인연금과 ISA계좌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불입액을 입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의 15% 세액공제 (초과자의 경우 12% 적용)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iCUBE 급여작업을 통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주택자금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국세청 자료 업로드 **공제 자료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주택자금

당해 연도 [주택자금]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저장

대출기관차입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 ※ 단독 세대주 포함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공제한도 : 연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거주자차입	10,50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구분	상환기간	입력액	공제한도	비고
2011년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미만	0	공제한도: 6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주택마련 저축납입액 공제) 금액이 해당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상환기간 15년~29년	0	공제한도: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0	공제한도: 1,500만원	
2012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공제한도: 1,500만원	
	기타대출	0	공제한도: 5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분할상환방식	1,800,000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0	공제한도: 1,500만원
	10년~15년	기타	0	공제한도: 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0	공제한도: 300만원

고정금리 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 단위로 금리 변경하는 경우 포함)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02 작업방법

8. 주택자금공제 수정 및 추가하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주택자금]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입력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기준시가5억원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구분 별로 도움 창에서 입력합니다.
- 2013년에 신설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_거주자차입'은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금액 칸을 더블 클릭 하면 나타나는 도움 창에서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도움 창 설명 : 23페이지)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iCUBE 급여작업을 통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주택자금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

·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추가 삭제

번호	대주(貸主)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		차입금이자율(%)	월리금상환액		
			시작일	종료일		계	원금	이자
1	김리원	890601-1189563	2019/01/01	2021/12/31	3.00	10,500,000	10,000,000	500,000

· 임대차 계약내용 추가 삭제

번호	임대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차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주택유형	계약면적(㎡)	우편번호	상세주소	시작일	종료일	
1	김지원	690506-2226533	단독주택	180.00	22222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77...	2019/01/01	2021/12/31	100,000,000

!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원리금 상환액을 적습니다.
 3.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적용
취소

02 작업방법

8_1. 거주자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주택자금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거주자차입’ 항목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도움 창입니다.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에서 상세 내용을 작성합니다.

- ♣ 인사담당자에게 자료 전송 후, 추가 수정을 위해 자료를 재전송 받아 추가 작업 시, 명세서를 확인하고 전송된 결과 값에 맞게 재등록 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기타소득공제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보험료 19,370,86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9,010,000
- 직불카드 3,090,000
- 현금영수증 3,350,000
- 연금보험료 5,70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0
- 세액공제 20,0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10,600,000

기타소득공제

당해 연도 [기타소득공제]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공제 입력		
개인연금저축납입금 (2000년이전가입)	2,000,000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액	0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0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공제한도(일반 : 400만원 / 벤처기업 등 :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청약저축	0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한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000,000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액(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2,500,000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됨(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한함)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0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을 기재 - 임금삭감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공제율 : 50% (공제한도 : 1천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공제한도 : 연 240만원)

02 작업방법

9. 기타소득공제 입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기타소득공제]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

- (1) 실제 납입한 납입금액 및 공제부금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 (2)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2000년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액

- (1)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공제부금을 입력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 출자금액을 입력합니다.

4)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1) 주택마련저축 별 해당 연도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5)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 (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단, 상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근로소득에서 임금 삭감 액의 100분의 50을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기타소득공제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기타소득공제

당해 연도 [기타소득공제]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입력

2019년 출자·투자분 조합1 ↗	<input type="text" value="150,000"/>
2019년 출자·투자분 벤처 ↗	<input type="text" value="0"/>
2019년 출자·투자분 조합2 ↗	<input type="text" value="0"/>
2020년 출자·투자분 조합1 ↗	<input type="text" value="0"/>
2020년 출자·투자분 벤처 ↗	<input type="text" value="0"/>
2020년 출자·투자분 조합2 ↗	<input type="text" value="100,000"/>
2021년 출자·투자분 조합1 ↗	<input type="text" value="0"/>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	<input type="text" value="5,000,000"/>
2021년 출자·투자분 조합2 ↗	<input type="text" value="0"/>

[참고] 한도 및 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2. 공제율

1) 조합1, 조합2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2) 벤처 : 개인이 직접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2018년 이후 :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02 작업방법

9. 기타소득공제 입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기타소득공제] 공제항목의 업로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 및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 창에서 입력합니다.
-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하므로 도움창에서 상세 내역을 작성합니다.
- (3) 저축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15.12.31까지 가입분 까지)

7) 투자조합출자투자금액

- (1)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2020.12.31 까지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해당 연도 별 구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 인사담당자에게 자료 전송 후, 추가 수정을 위해 자료를 재전송 받아 추가 작업 시, 명세서를 확인하고 전송된 결과 값에 맞게 재등록 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조특법 §16 ① 2호 투자구분이 '조합2' 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세액감면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세액감면

당해 연도 [세액감면]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저장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	<input type="text" value="0"/>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외국인 기술자 등 감면	<input type="text" value="0"/>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 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1.1. 이후 취업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014.1.1. 이후 취업자) - 경력단절여성 해당중소기업에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는 여성(2017.1.1. 이후 취업한 경우 적용) - 감면율 2014.1.1.~2015.12.31. 취업자 : 50% 2016.1.1.~2021.12.31. 취업자 : 70% - 감면세액 계산 [산출세액(근로소득) × (5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50%]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7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70%], 150만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감면	<input type="text" value="1,500,000"/>	< 청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병역 이행기간 차감, 6년 한도)인 자 (2012.1.1. 이후 취업자)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로서 복직일로부터 2년, 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 적용기한 : 2021년 - 감면율 : 90% - 감면세액 계산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조세특례 제한법		

02 작업방법

10. 세액감면 입력

해당하는 세액감면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소득세법)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감면대상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감면대상 근로자가 '14.1.1일부터 '21.12.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의 50% 70%, 90% 를 세액감면 적용합니다. (단,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은 '14.1.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은 '17.1.1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 적용)

♣ 청년감면을 적용

- '14.1.1. ~ '15.12.31. 취업자 : 50%
- '16.1.1. ~ '17.12.31. 취업자 : 70%
- '18.1.1. 이후 취업자 : 90%

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 적용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및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제외)
- 적용기한 : '21. 12. 31.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세액감면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세액감면

당해 연도 [세액감면]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저장

보철료	21,149,400		
의료비	5,750,000		
교육비	4,000,000		
신용카드	8,800,000		
직불카드	3,500,000		
현금영수증	2,740,000		
연금보험료	7,860,000		
주택자금	12,300,000		
기타소득공제	10,750,000		
세액감면	2,042,098		
세액공제	20,000,000		
종전근무지	30,000,000		
기부금	0		

조세특례 제한법			<p>< 청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병역 이행기간 차감, 6년 한도)인 자 (2012.1.1. 이후 취업자)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로서 복직일로부터 2년, 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 적용기한 : 2021년 - 감면율 : 90% - 감면세액 계산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0	<p>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제외)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p> <p>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총급여액) × 50%</p>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285,315	<p>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p> <p>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 × (기업기여금/총급여액) × 50%</p>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256,783	<p>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30%를 감면</p> <p>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 × (기업기여금/총급여액) × 30%</p>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세액감면		0	<p>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5년간 감면</p> <p>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50%</p>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		0	<p>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교사 및 교수로서 초·중·고교와 같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p>

02 작업방법

10. 세액감면 입력

해당하는 세액감면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5)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 사업에 2021.12.31.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제외)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중소기업은 소득세의 50%, 중견기업은 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 적용기한 : '21. 12. 31. 가입분까지

6)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세액감면

-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 적용합니다.
- 적용기한 : '22. 12. 31.

7) 외국인근로자(조세조약)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교사 및 교수로서 초·중·고교와 같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 출자금액을 입력합니다.

- ♣ Smart 연말정산 최종 확인 후 마지막에 세액계산 버튼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 ♣ iCUBE 급여작업을 통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세액공제

! 당해 연도 [세액공제]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저장

납세조합공제액	<input type="text" value="15,000,000"/>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입력함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	<input type="text" value="0"/>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input type="text" value="0"/>	2016년 귀속분부터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 대상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 ?	<input type="text" value="0"/>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때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차하는 비율을 공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지출액 ?	<input type="text" value="5,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2%)

02 작업방법

11. 세액공제 입력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1)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세액 공제합니다.

2)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

- '95.11.0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0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기준으로 입력하여 세액 공제합니다.
- 입력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 공제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액 중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10분의 10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90,909원 한도)
-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반영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세액공제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보험료 19,370,86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9,010,000
- 직불카드 3,090,000
- 현금영수증 3,350,000
- 연금보험료 5,70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0
- 세액공제 20,0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10,600,000

세액공제

당해 연도 [세액공제]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납세조합공제액	15,000,000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입력함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	0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0	2016년 귀속분부터 1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 대상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 ?	0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때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지출액 ?	5,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2%)

02 작업방법

11. 세액공제 입력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4)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 공제합니다.
- [정산자료입력] > 외국납부세액 도움창에 상세내역과 세액공제액을 입력합니다.

5) 월세액 지출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로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 월세지급액의 **10%를 연 750만원 한도(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 적용)** 로 공제합니다.
- '월세액 지출액'은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입력 칸을 선택하여 도움 창에서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도움 창 설명 : 30페이지)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출액
✕

· 월세세액공제 명세

추가
삭제

번호	임대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차계약기간		월세지출액	주택유형	주택면적
			우편번호	상세주소	시작일	종료일			
1	김정원	7805012222365	22236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7...	2021/01/01	2021/12/31	5,000,000	1.단독주택	190.00

! 1.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 지출액을 적습니다.
 3. 연간월세액(원)은 7,500,000원 까지만 입력합니다.

적용
취소

02 작업방법

5_1) 월세액 세액공제를 작성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정산자료입력' 탭 > '월세세액공제 지출액'의 금액 칸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도움말 창(월세 세액공제명세)에서 상세 내용을 작성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는 2013.0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또는 12%) 세액공제 적용.
- ♣ 인사담당자에게 자료 전송 후, 추가 수정을 위해 자료를 재전송 받아 재작업 시, 명세서를 확인하여 재등록 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종전근무지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구분	금액	종전근무지																																																																				
보험료	19,370,860																																																																					
의료비	5,750,000																																																																					
교육비	4,000,000																																																																					
신용카드	9,010,000																																																																					
직불카드	3,090,000																																																																					
현금영수증	3,350,000																																																																					
연금보험료	5,700,000																																																																					
주택자금	12,300,000																																																																					
기타소득공제	10,750,000																																																																					
세액감면	0																																																																					
세액공제	20,000,000																																																																					
종전근무지	30,000,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코드</th> <th>근무지구분</th> <th>회사명</th> <th>사업자번호</th> <th>귀속시작일</th> <th>귀속종료일</th> <th>감면시작일</th> <th>감면종료일</th> <th>종교관련종사자여부</th> </tr> </thead> <tbody> <tr> <td>200</td> <td>종전</td> <td>douzone</td> <td>111-11-11111</td> <td>2021/11/10</td> <td>2021/11/10</td> <td>2021/11/10</td> <td>2021/11/10</td> <td>비해당</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소득명세</th> <th>금액</th> <th>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급여</td> <td></td> <td>20,000,000</td> <td>국민연금납입액 1,200,000</td> </tr> <tr> <td>상여</td> <td></td> <td>10,000,000</td> <td>공무원연금 0</td> </tr> <tr> <td>인정상여</td> <td></td> <td>0</td> <td>군인연금 0</td> </tr> <tr> <td>주식매수선택권...</td> <td></td> <td>0</td> <td>사립학교교직원연금 0</td> </tr> <tr> <td>우리사주조합인출금</td> <td></td> <td>0</td> <td>별정우체국연금 0</td> </tr> <tr> <td>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td> <td></td> <td>0</td> <td>직무발명보상금 0</td> </tr> <tr> <td>결정세액(소득세)</td> <td></td> <td>3,000,000</td> <td>연금계좌불입액 3,100,000</td> </tr> <tr> <td>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td> <td></td> <td>0</td> <td>건강보험납입액 12,000,000</td> </tr> <tr> <td>결정세액(지방소득세)</td> <td></td> <td>300,000</td> <td>고용보험 60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0</td> </tr> </tbody> </table>							코드	근무지구분	회사명	사업자번호	귀속시작일	귀속종료일	감면시작일	감면종료일	종교관련종사자여부	200	종전	douzone	111-11-11111	2021/11/10	2021/11/10	2021/11/10	2021/11/10	비해당	* 소득명세		금액	공제액	급여		20,000,000	국민연금납입액 1,200,000	상여		10,000,000	공무원연금 0	인정상여		0	군인연금 0	주식매수선택권...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0	직무발명보상금 0	결정세액(소득세)		3,000,000	연금계좌불입액 3,100,000	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		0	건강보험납입액 12,000,000	결정세액(지방소득세)		300,000	고용보험 600,000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0
코드	근무지구분	회사명	사업자번호	귀속시작일	귀속종료일	감면시작일	감면종료일	종교관련종사자여부																																																														
200	종전	douzone	111-11-11111	2021/11/10	2021/11/10	2021/11/10	2021/11/10	비해당																																																														
* 소득명세		금액	공제액																																																																			
급여		20,000,000	국민연금납입액 1,200,000																																																																			
상여		10,000,000	공무원연금 0																																																																			
인정상여		0	군인연금 0																																																																			
주식매수선택권...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0	직무발명보상금 0																																																																			
결정세액(소득세)		3,000,000	연금계좌불입액 3,100,000																																																																			
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		0	건강보험납입액 12,000,000																																																																			
결정세액(지방소득세)		300,000	고용보험 600,000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0																																																																			
기부금	10,600,000																																																																					

01 개요

종전근무지 및 납세조합을 직접 등록하고 추가/삭제 작업을 통해 최종 연말정산 공제 데이터를 확정 등록합니다.

02 작업방법

12. 종전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기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기부금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년월 조회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기부금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하니,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기부금 입력 시 상단 [기부금입력]에서 등록하며, 전년도 이월기부금 입력 시 하단 [기부금조정명세]에서 등록합니다.

• 기부금 입력 저장 인쇄 복사 추가 삭제

번호	자료구분	구분	기부		기부처		건수	기부자			공제대상 기부금액
			형태	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관계	
1	국세청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금전	금전기부금	(주) 한국	1105626536222	1	박순심	57/01/01	소득...	1,000,000
2	국세청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현물	현물기부금	(주)한국	1105626536222	1	김길동	75/01/01	본인	1,500,000
3	국세청자료	정치자금기부금	금전	금전기부금	(주)기부	1152653333254	1	김길동	75/01/01	본인	500,000
4	국세청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금전	금전기부금	(주)소득	5552653215223	2	홍미영	81/01/01	배우자	1,500,000
합 계											5,200,000

• 기부금 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로 반영 공제금액 계산 추가 삭제

번호	구분	기부연도	(14)기부금액	(15)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6)공제대상 금액(14-15)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실세액(소득) ...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	정치자금기...	2021	500,000	0	500,000	0	500,000	0	0	150,909
2	「소득세법...	2021	2,500,000	0	2,500,000	0	0	0	2,500,000	0
3	우리사주조...	2021	100,000	0	100,000	0	0	100,000	0	0
4	「소득세법...	2021	1,500,000	0	1,500,000	0	0	0	1,500,000	0
5	「소득세법...	2021	600,000	0	600,000	0	0	0	600,000	0

01 개요

‘국세청 자료 업로드’를 통해 전송한 기부금명세 PDF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고, 직접 수정 및 추가/삭제 작업을 통해 최종 연말 정산 공제 데이터를 확정 등록합니다

02 작업방법

13. 기부금명세 입력하기

기부금 공제액이 있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명세를 본인과 각 부양가족 별로 입력합니다.
 - 코드 칸을 더블 클릭하면 기부금 관리내역코드도움 창이 나타나고 해당 지출 기부금의 관리내역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성명 칸을 더블 클릭하면 부양가족 도움 창이 나타나고, 기부금을 지출한 가족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입력됩니다.
 - 단, 기부유형이 20. 정치자금. 42. 우리사주기부금인 경우 본인만 선택 가능합니다.
 - 2016년 귀속 부터 『기부금명세서』 서식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부금액은 ‘실제공제대상금액’에 입력 하고, 기부장려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공제 제외 기부금은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에 입력합니다. 단, 기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공제 자료 입력 > 기부금

연말정산자료입력

기본 정보 입력 > 국세청 자료 업로드 > **공제 자료 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정산년월: [선택] 조회

- 보험료 21,149,400
- 의료비 5,750,000
- 교육비 4,000,000
- 신용카드 8,800,000
- 직불카드 3,500,000
- 현금영수증 2,740,000
- 연금보험료 7,860,000
- 주택자금 12,300,000
- 기타소득공제 10,750,000
- 세액감면 2,042,098
- 세액공제 20,000,000
- 종전근무지 30,000,000
- 기부금 5,200,000**

기부금

1.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버튼을 누르셔야합니다.
 2. 데이터 입력시 Enter키 또는 Tab키로 셀(칸)이동이 불가능하며, 마우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기부금 입력 시 상단 [기부금입력]에서 등록하며, 전년도 이월기부금 입력 시 하단 [기부금조정명세]에서 등록합니다.

기부금 입력 [저장] [인쇄] [복사] [추가] [삭제]

번호	자료구분	구분	기부		기부처		건수	기부자			공제대상 기부금액
			형태	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관계	
1	국세청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금전	금전기부금	(주) 한국	1109626536222	1	박순심	57/01/01	소득...	1,000,000
2	국세청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현물	현물기부금	(주)한국	1109626536222	1	김길동	75/01/01	본인	1,500,000
3	국세청자료	정치자금기부금	금전	금전기부금	(주)기부	115265333254	1	김길동	75/01/01	본인	500,000
4	국세청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금전	금전기부금	(주)소득	5552653215223	2	홍미영	81/01/01	배우자	1,500,000
합계											5,200,000

기부금 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로 반영] [공제금액 계산] [추가] [삭제]

번호	구분	기부연도	(14)기부금액	(15)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6)공제대상 금액(14-15)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실세액(소득) ...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	정치자금기부...	2021	500,000	0	500,000	0	500,000	0	0	150,909
2	『소득세법』...	2021	2,500,000	0	2,500,000	0	0	0	2,500,000	0
3	우리사주조...	2021	100,000	0	100,000	0	0	100,000	0	0
4	『소득세법』...	2021	1,500,000	0	1,500,000	0	0	0	1,500,000	0
5	『소득세법』...	2021	600,000	0	600,000	0	0	0	600,000	0

02 작업방법

13. 기부금명세 입력하기

기부금 공제액이 있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기부금명세가 있는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 탭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명세를 작성합니다.
- 당해연도 입력한 기부금을 <기부금조정명세로 반영> 버튼을 통해 [기부금조정명세]로 적용합니다.
 - [기부금조정명세]에 당해연도 기부금 데이터 반영 후,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실공제금액을 <공제금액 계산> 버튼을 통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공제금액 계산> 시 이는 참고용 지원이며, 기타 사유에 의해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소멸금액, 이월금액), 실공제금액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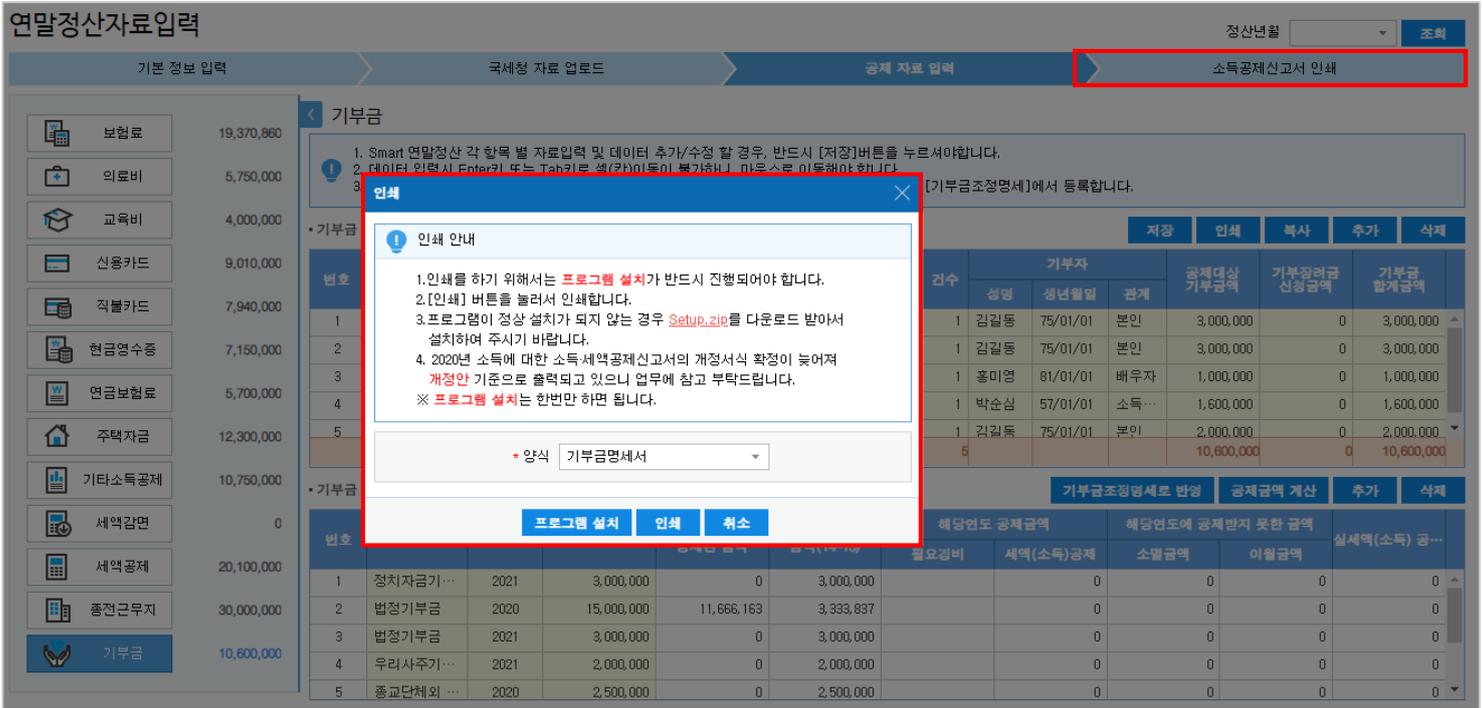
♣ 공제율 적용

- 당해 기부금 한도 내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산 금액의 15% 세액공제 (단, 2021년 기부금인 경우에는 한도 내 합산 금액의 20% 세액공제)
- 2014년 ~ 2015년 기부금 이월금액 : 해당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 2016년 ~ 2018년 기부금 이월금액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2019년 ~ 2020년 기부금 이월금액: 해당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2021년: 해당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5%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100/11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15%(3천만원 이하), 25%(3천만원 초과)

♣ Smart 연말정산 각 항목 별 자료입력 및 데이터 추가/수정 할 경우, 반드시 [저장] 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 위치 : [연말정산자료입력] >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01 개요

최종 연말정산 공제 데이터를 확정 등록하고, 소득공제신고서를 인쇄합니다.

02 작업방법

1. 소득공제신고서 인쇄

- 1) 프로그램 설치 : 인쇄 하기 전 프로그램 설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2) 인쇄 : 소득공제신고서를 인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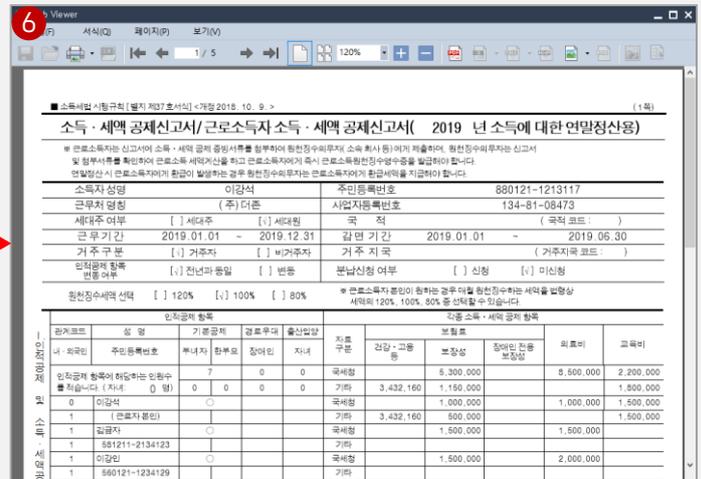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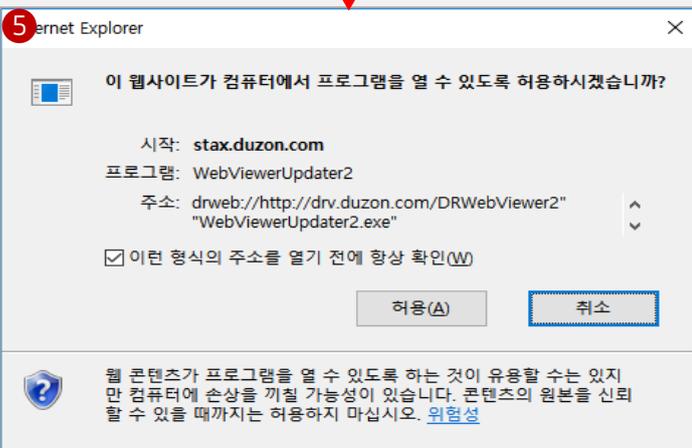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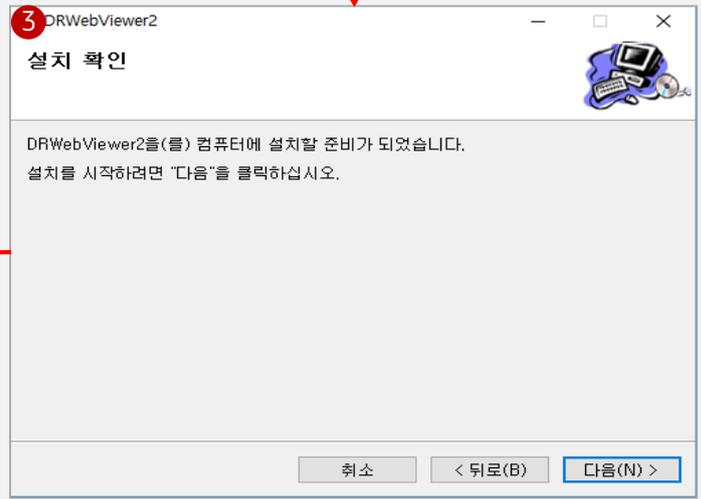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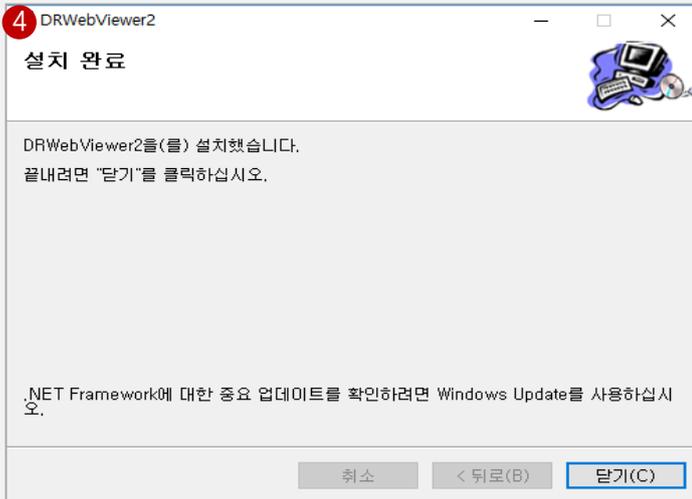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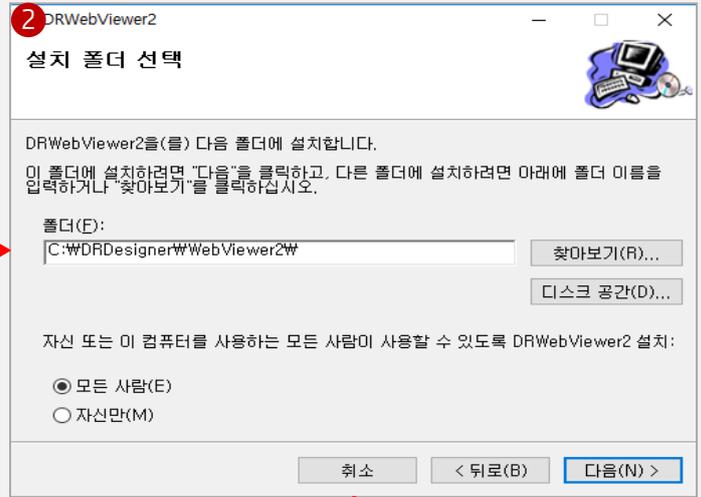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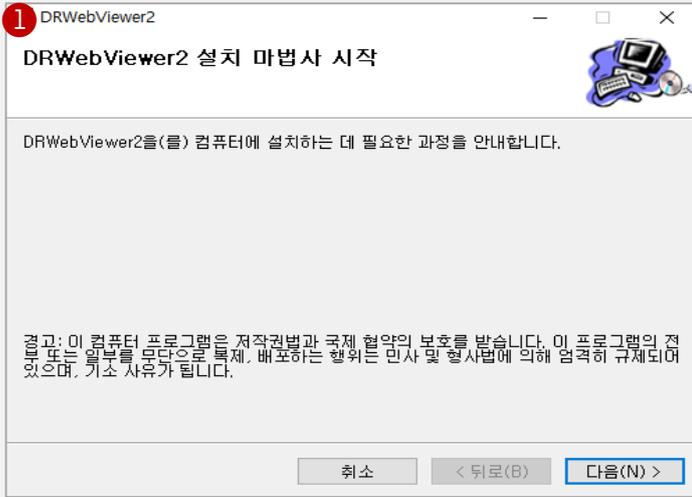
03 작업순서

<작업순서>

- ① 프로그램 설치 (최초 1회) → ② 인쇄 버튼 클릭 → ③ 프로그램 사이트 허용 (발생 여부 선택 가능) → ④ 인쇄 미리보기 확인 후 인쇄

3. 연말정산자료입력

04 인세 뷰어 설치과정



4. 연말정산명세

- 위치 : [연말정산명세]

더존 iCUBE

연말정산 > 연말정산명세

연말정산명세

21. 총급여((16),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근로소득)	250,180,000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148,038,930
22. 근로소득공제	17,753,600	49. 산출세액	36,913,625
23. 근로소득금액	232,426,400	50. 「소득세법」	
24. 본인	1,500,000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265,586
25. 배우자	1,500,000	52. 「조세특례제한법」제 30조	
26. 부양가족(3)명	4,500,000	53. 조세조약	
27. 경로우대(3)명	3,000,000	54. 세액감면계	265,586
28. 장애인(1)명	2,000,000	55. 근로소득	500,000
29. 부녀자		56. 자녀	150,000
30. 한부모가족		공제대상자녀(1)명	
31.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187,470 공제금액 187,470	출산·입양자()명	
32. 공적연금보험료공제	①공무원연금 ②군인연금 ③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④별정우체국연금	57.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33. 보험료	⑤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⑥고용보험료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34. 주택임차자임금관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59.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미만 15~29년 30년이상	59-1.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2,000,000 세액공제액 240,000
2012년 이후	고정금리이거나	60. 보험료	보장성 장래인전용 보장성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01 개요

인사담당자가 검토한 확정된 연말정산 결과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근로자가 스마트연말정산에 입력한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2 유의사항

정산명세는 확정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 검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정산명세는 확정된 연말정산결과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 검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위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더존 iCUBE
이강석
원격A/S

연말정산 > 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등록가이드
연말정산자료입력
연말정산명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정산년월
조회
인쇄

! 실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Ⅲ.근로소득원천징수액등]의 '2.차감원천징수액'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자 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귀속연도														
징수의무자	2.법인명(상호)	(주)더존												
	3.사업자등록번호													
	4.근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1가, 부영출자빌딩)												
소득자	5.성명	이강석	6.주민등록번호										7.입사일/퇴사일	2017.01.01~
	8.내외국인 구분	내국인	9.국적	(국적코드 :)										
	10.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1명												
	11.20세 이하 자녀의 수	0명												
	12.감면 적용 여부	여												
	13.감면규정													14.감면기간

1. 근로소득지급명세															
월별	15.지급연월	총 급여								2.징수세액					
		16.급여	17.상여	18.인정상여	19.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0.우리사주조합인출금	21.임원퇴직소득금액	22.~	29.	30.계	간이세액표 적용대상		34.소득세계	35.지방소득세	
											31.급여구간	32.소득세			33.소득세
01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0		52,360	5,230
02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0		52,360	5,230
03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0		52,360	5,230
04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437,650		437,650	43,760
05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06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07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08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09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10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11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12		5,893,333								5,893,333	5,880,000~ 5,900,000	523,690		523,690	52,360
계		70,719,996	0	0	0	0	0	0	0	70,719,996		4,784,250		4,784,250	478,330

01 개요

연말정산 진행을 위한 당해 년도 각종 급여 데이터 정보를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02 유의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하기
 - 연말정산 공제를 위한 각종 급여 데이터(총 급여, 비과세, 원천징수 세액 등)를 확인합니다.
 - 실제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은 [Ⅲ.근로소득원천징수액등]의 '2.차감원천징수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위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더존 iCUBE
김길동
원격 A/S

연말정산

- 연말정산등록가이드
- 연말정산자료입력
- 연말정산명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년월 조회 인쇄

1. 본 화면에서 인쇄는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고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Smart 연말정산 인쇄 작업을 위한 WEB 브라우저는 크롬(Chrome)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으며, 크롬(Chrome)을 통한 인쇄작업을 권장합니다.

관리 번호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p>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거주구분</td> <td>거주자</td> </tr> <tr> <td>거주지국</td> <td>거주지국코드</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td> </tr> <tr> <td>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부</td> </tr> <tr> <td>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td> <td>부</td> </tr> <tr> <td>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 <td>부</td> </tr> <tr> <td>국적</td> <td>국적코드</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세대원</td> </tr> <tr> <td>연말정산 구분</td> <td>계속근로</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부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부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부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원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
거주구분	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부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부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부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원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더존 본사	② 대표자(성 명)	김민주
	③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9	④ 주민 등록 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부	⑤-2 종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③ 소재 지(주 소)	(2443)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169 (온의동)		
	⑥ 성 명	김길동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750101-111111
	⑧ 주 소			

	구 분	주(현)	총(전)	총(전)	⑧-1 납세조합	합 계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⑨ 근무처명	더존 본사	douzone			
	⑩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9	111-11-11111			
	⑪ 근무기간	2021/01/01~2021/12/31	2021/01/01~2021/12/31	~	~	
	⑫ 감면기간	2021/01/01~2021/12/31	2021/10/01~2021/12/31	~	~	
	⑬ 급여	111,340,000	20,000,000			131,340
	⑭ 상여		10,000,000			10,000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01 개요

최종 마감 된 연말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및 인쇄합니다.

02 작업방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 1) 인사 담당자가 iCUBE를 통해 최종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근로자 개인 스마트 연말정산으로 전송해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 최초 근로자가 작성한 데이터와 최종 전송 받은 데이터는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력 데이터 수신 후, 인사 담당자가 수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정 등 최종 작업을 진행하므로 최초 입력 데이터와 최종 마감 데이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존iCUBE 인사

38

더존비즈온

Maximizing
Potential

—
감사합니다.



DOUZONE
www.douzone.com